

고성군 당항포 관광지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84
----------	-----

제출년월일 : 2004. 11. 29.

제 출 자 : 고성군수

1. 개정이유

임시휴장기간 종료와 더불어 2002년 1월 개정 및 2003년 4월 신설된 입장료 등을 현실에 상응토록 조정 및 통합하여 한층 업그레이드된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200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주 개최지로서의 당항포관광지 위상 제고

2. 주요내용

- 가. 수석전시관, 자연사박물관 관람료징수 폐지(안 제7조의2)
- 나. 용어의 정의에 관한사항(안 제8조)
- 나. 고성군민 입장료 50% 감면(안 제8조제2항)
- 다. 입장료, 자연사전시관, 수석전시관 관람료를 통합징수(안 별표1)

3. 참고사항

- 근거법령 : 관광진흥법 제64조(입장료등의징수및사용)
- 입법예고 : 고성군 공고 제2004-397호(11.6 ~11.25)
⇒ 의견 제출사항 없음.

4. 본문 : 붙임

고성군당항포관광지 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안 제8조의 제목 “입장료등의 면제 및 감면”을 “입장료 등의 면제 및 경감”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군수는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자에 한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안[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3, 별표4, 별지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전시관등의관람료) ①전시관등의 관람료징수기준은 별표3과 같다. 다만, 자연사박물관 및 수석전시관을 동시에 관람하고자 할 경우 별표 4와 같이 한다.</p> <p>②기타 전시관등의 관람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요율을 결정한다.</p> <p>③관람권의 서식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p> <p>④관람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p> <p>제8조(입장료등의면제및감면)</p> <p>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p> <p><신설></p> <p>②(생략)</p>	<p>제7조의2(전시관등의관람료) <삭제></p> <p>제8조(입장료등의면제및경감)</p> <p>①(현행과 같음)</p> <p>②군수는 고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자에 한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별표 1]

입장요금표

(현행)

(단위 : 원)

구분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1,000	800	800	500
단체	900	700	700	400

입장요금표

(개정안)

(단위 : 원)

구분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개인	4,000	2,400	2,400	1,000
단체	3,500	2,000	2,000	800

[별표3]

관람요금표

(현행)

(단위 : 원)

구분	어른	청소년·일반	어린이
자연사전시관	개인	1,000	500
	단체	900	400
수석전시관	개인	1,000	500
	단체	900	400

(개정안) - 삭제

[별표4]

(현행)

자연사박물관·수석전시관 동시관람 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일반	어린이
개 인	1,500	1,000	700
단 체	1,400	800	500

(개정안) - 삭제

[별지 제4호 서식]

(현 행)

관람권 서식(개인, 단체 동일)

<u>○○○관람권</u>	<u>○○○관람권 영수증</u>
일련번호 :	일련번호 :
구 분 :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 분 :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요 금 : 원	요 금 : 원
<u>당항포관광지</u>	<u>당항포관광지</u>

· 규격 : 130m/m × 60m/m

· 단체관람권은 단체를 관람권 다음에 ()표기

(개정안) - 삭제

고성군당항포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당항포관광지(이하“관광지”라 한다)의 보호 관리와 관광진흥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지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및 시설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본 관광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및 봉동리 일원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지의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음과 같다.

1. 어 른 : 20세이상 64세이하인자로서 제2호(군인), 제3호(청소년) 이외인 자
2. 군 인 : 하사 이하의 군인과 수경 이하의 전투경찰을 말한다.
3. 청소년 : 13세이상 19세이하의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고등학생, 대학생(전문대학 포함)을 말한다.
4. 어린이 :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인 자를 말한다.
5. 노 인 : 65세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단 체 : 30인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5조(입장요금) 입장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입장료징수등) ①입장료는 관리사무소(직원이 직접 취급하는)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판매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이미 납입한 입장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입장료는 동절기 (11. 1.~ 2.28.)에는 09:00부터 17:00까지 하절기(3.1~10.31)에는 09:00부터 18:00까지 징수한다. 다만, 관광성수기에는 징수시간을 연장운용할 수 있다.

④당일 징수한 입장료를 익일 12시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입장권의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시설이용료) ①시설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기타 시설이용료는 시설할 때마다 시설비와, 유지관리비를 고려하여 그 효율을 결정한다.

③주차권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④야영장 이용권의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⑤이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은 입장료의 예에 준한다.

제8조(입장료등의 면제 및 경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등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3. 학술조사단
4. 6세이하인 어린이와 65세이상인 자
5. 국가기관에서 요양중인 상이군경, 장애인복지법의 관련규정에 의한 장애인수첩소지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증 소지자
6.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 어린이 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근로자의 날에 입장하는 근로자, 현충일에 입장하는 유가족
7.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군수는 고성군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자에 한하여 입장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군수는 경승용차(800cc이하)에 대하여 시설이용료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요금포의 게시) 입장요금포와 시설사용료는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징수) ①군수는 입장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하여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징수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에 붙일 수 있다.

제11조(수익금의 사용) 이 조례에 정한 수익금은 관광지의 보존 및 시설관리와 개발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제12조(준용) 입장료의 징수에 관하여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준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있어 관람료 징수는 관람시설을 개장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1호중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당항포관광지”로 한다.

②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2조제1호 및 별표2 중 ‘당항포국민관광지’를 ‘당항포관광지’로 한다.

[별표 1]

입 장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어 른	청소년	군 인	어린이
개 인	4,000	2,400	2,400	1,000
단 체	3,500	2,000	2,000	800

[별표 2]

시 설 이 용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당일	체류 (숙박)	비 고
주 차 료	이륜차	400	800	
	승용차	1,500	3000	
	버 스	3,000	3,000	
	화물차	3,000	6,000	
야 영 장 이 용 료	소형천막	2,000		1일당
	대형천막	4,000		1일당
컨벤션홀 이 용 료	1회	50,000		4시간기준
	1일	100,000		8시간기준

[별지 제1호서식]

○ 입장권서식(개인, 단체동일)

<p>입 장 권</p> <p>일련번호 :</p> <p>구 분 :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p> <p>요 금 : 원</p> <p>당항포관광지</p>	<p>국민관광지 주요경관 사진</p> <p>(뒷면 : 당항포 역사 및 입장료시설 사용료 표시)</p>
--	--

- 규격 : 130m/m×60m/m
- 단체입장권은 “단체”를 입장권 다음에 () 표기

[별지 제2호서식]

○ 주차권 서식

<p>주 차 권(원부)</p> <p>일련번호 :</p> <p>구 분 : 대형, 소형</p> <p>주차기간 : 당일, 체류</p> <p>요 금 : 원</p> <p>당항포관광지</p>	<p>주 차 권(영수증)</p> <p>일련번호 :</p> <p>구 분 : 대형, 소형</p> <p>주차기간 : 당일, 체류</p> <p>요 금 : 원</p> <p>당항포관광지</p>
---	--

- 규격 : 120m/m×60m/m

[별지 제3호서식]

○ 야영장 이용권서식

야영장 이용권(원부)	야영장 이용권(영수증)
일련번호 : 구 분 : 대형, 소형 주차기간 : 당일, 체류 요 금 : 원 당항포관광지	일련번호 : 구 분 : 대형, 소형 주차기간 : 당일, 체류 요 금 : 원 당항포관광지

· 규격 : 120m/m×60m/m